

# ‘10·29 이태원 참사’

## 유가족 협의회(가) 준비모임 요청사항

### 1. 국회 내 희생자 추모공간 마련

- 유가족과 “협이하어” 국회 내에도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

### 2. 국회 내 유가족 소통공간 마련

- 유가족이 국정조사기간 동안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이 필요

### 3. 유가족 추천 전문위원 임명 및 예비조사 실시

- 국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위원을 임명하고,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전문위원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

**국회법 제42조(전문위원과 공무원)**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(이하 "전문위원"이라 한다)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.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「국회사무처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(예비조사)** 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### 4. 국정조사 진행경과 설명 및 조사자료 등의 제공

- 국정조사 기관보고, 현장검증, 기관 질의, 청문회 실시 등에 있어 진행경과 브리핑 필요

- 국정조사 질의/자료요청을 통해서 수집되는 자료를 유가족/유가족대리인에게 제공

## 5. 국정조사 전 과정에 유가족 참여 보장

- 회의 개시 전 유가족 발언 기회 보장
- 유가족 증인채택 등 진술기회 보장

## 6. 추모공간, 소통공간 등 준비에 있어 협의 선행 요청

- 국회, 행정부, 지방자치단체, 원스탑서비스센터가 희생자 추모공간이나 유가족 소통공간을 마련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장소 선정, 설문조사, 통지 등을 하지 말 것
- 유가족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 요구사항을 전달한 유가족들과 협의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